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 정 2017. 08. 31.

개 정 2023. 03.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등의 구분)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다.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 라.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 마.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2.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제4조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수수료 등을 운용자산의 규모, 특성,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기간,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받을 수 있다.
 - 2.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법 제7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환매수수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 (집합투자업 수수료 부과절차)

-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에 관한 비율, 금액, 부과절차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의 사유로 투자·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수수료 부과절차)

- ①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전항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주기 및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수수료 등을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등의 인상)

-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수수료 등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상 해당 수수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 등)

회사는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침 주관부서)

이 지침의 주관부서는 컴플라이언스실이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